



보도 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2. 11. 16.(수) 09:00		
담당 부서	통관국	책임자	과 장	김희리 (042-481-7810)	
	통관물류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최진욱 (042-481-7851)	
	통관국	책임자	과 장	조한진 (042-481-7840)	
	전자상거래통관과	담당자	사무관	이영주 (042-481-7835)	

해외직구 물품,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세청, 「수입통관 고시」 개정, 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

- (개요) 관세청(청장 윤태식)은 11월 17일(목)부터 ‘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’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조치는,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「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」의 후속 조치다.
 - (현행) 물품가격이 150달러(미국발(發) 200달러)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·부가세가 면제되지만,
 -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·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,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.
-
- ※ [사례]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(150달러), 12월 10일 완구(100달러)를 구매했는데,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
- 의류,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(·입항일 동일) → 7만원 세금 부담
 - ※ 7만원 = 35만원[(150달러+100달러)×환율(1,400원/달러)] × 20%(간이세율=관세+부가세 포함 간편세율)
 - 만일, 입항일이 달랐다면, 각각 소액(150달러 이하)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'면세' 가능
- 이로 인해,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,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.
 - * '22.상반기 관세청 고객센터 민원 3만8천건 중 합산과세 민원 1,856건
- (개선)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서 ‘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’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(삭제)했다.

- 11월 17일(목) 이후 수입신고(또는 통관목록 제출)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,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,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(계획)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“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”며, “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: 「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」(요약) - 10.5 발표



< 20대 과제 요약 >

<p>① 국민편의 제고</p>	<p>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·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(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)
	<p>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(모바일)'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·신고일자·개인통관고유부호·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
	<p>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, 납부(가상계좌 제공), 반품시 세금 환급 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'모바일 세금납부·환급신청 시스템' 구축
	<p>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' 등은 처벌되나, '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,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'을 명확히 안내
<p>② 소비자 보호</p>	<p>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해외직구 운영업체(플랫폼)에서 해외직구시, 해외직구 운영업체(플랫폼)의 '고객 가입정보'와 관세청의 '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' 일치 여부 검증 - 2)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(모바일)에 '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' 추가 - 3) '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'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
	<p>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봇 신규 도입 - 2) 해외직구 운영업체(플랫폼)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
	<p>⑦ 유해 식·의약품 반입 차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식·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·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축화 및 협업검사 강화 - 2) 해외직구 제한 식·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
	<p>⑧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- 2)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, 통관부호 도용,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
	<p>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- 2)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, 신속통관

<p>③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</p>	<p>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(인천·평택·김포)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- 2)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(서류제출 전산화, 부분정정 허용)
	<p>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 대비 30%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·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* 대(對)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
	<p>⑫ 기업 마이데이터 운영체계(플랫폼)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- 2)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,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
	<p>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지자체(부산시)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수출입업 지원사업 추진 - 2)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(플랫폼) 입점 전문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
<p>④ 제도·인프라 정비</p>	<p>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수출 유망품목·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- 2)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
	<p>⑮ 한국-중국 복합운송 활성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작업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·해·공 복합운송 추진
	<p>⑯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상거래물품 정의, 통관절차, 거래정보 제공·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
	<p>⑰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전자상거래 유형,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- 2)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'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' 신설
	<p>⑱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경인권역: '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' 신축 완료('23.9) - 2) 서해안권역: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·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- 3) 경남권역: 부산세관 권역을 대(對)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
<p>⑲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- 2) 연구개발(R&D)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(X-ray)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- 3) 인공지능 엑스레이(AI X-ray)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	
<p>⑳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)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(GDC)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- 2)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(GDC)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	